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1. 서비스 제공자(이하“을”이라칭함)의 의무

- 1) 대상자(이하“갑”이라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집근처가 아닌 먼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4) 생활상담, 조언 의무

5)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무

## 2. 입소자의 의무

1)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3) 기타 기관규칙 이행의무

## 3. 보호자(이하“병”이라칭함)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대상자의 월이용료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시즉시통보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5) 대상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가.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 계약의 해제

1.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 비용부담 내역

### ♣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 비용부담 내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2026년한도액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수급자     |           | 0% 부담                     |           |           |
|          | 경감대상자     |           | 6%(60%감경)<br>9%(40%감경) 부담 |           |           |
|          | 일반수급자     |           | 15% 부담                    |           |           |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원)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본인부담금<br>(일반)15% | 본인부담금<br>9% | 본인부담금<br>6% |
|------|--------|--------|------------------|-------------|-------------|
| 가-2  | 60분이상  | 25,320 | 3,798            | 2,279       | 1,519       |
| 가-3  | 90분이상  | 34,120 | 5,118            | 3,071       | 2,047       |
| 가-4  | 120분이상 | 43,430 | 6,515            | 3,909       | 2,606       |
| 가-5  | 150분이상 | 50,640 | 7,596            | 4,558       | 3,038       |
| 가-6  | 180분이상 | 57,020 | 8,553            | 5,132       | 3,421       |
| 가-7  | 210분이상 | 63,530 | 9,530            | 5,718       | 3,812       |
| 가-8  | 240분이상 | 70,080 | 10,512           | 6,307       | 4,205       |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제공시 급여비용 30% 가산(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 일요일 급여제공시 급여 비용의 30% 가산

\* 근로자의날 급여 제공시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50% 가산)

\* 월 한도액 초과 서비스시에는 비급여로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수급자 개인 업무와 일정(병원진료,마트,은행업무 등)을 위해 발생하는 경비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함.

## 은 호 재 가 복 지 센 터